

2.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

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: 이경희 ☎2133-7830 정신건강증진팀장: 이경춘 ☎7551 담당: 지윤선 ☎7548

사업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 전용)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안전부)
- 서울심리지원센터 이전 관련 예산 전용 계획(시민건강국, '23.9.25.)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(서남)센터 이전 및 상담환경개선사업
- 사업내용 : 서남센터 이전에 대한 부대비용(집기류 구매) 지원
- 소요예산 : 20,000천원 (전액 시비)

예산전용 사유

- 자본 형성적 경비인 부대비용(집기류 구매)을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

예산전용 내역 ('23. 9. 26.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전용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시민건강 수준향상	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	서울심리 지원센터 운영	민간이전 (307)	민간위탁금 (05)	1,647,035	-	20,000	1,627,035
			민간자본 이전 (402)	민간위탁 사업비 (03)	-	20,000	-	20,000